

학습자료 (성폭력 예방관리)

1차시 성폭력 예방관리

*성폭력

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.
- 법률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 즉,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.
-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뜻한다.
-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,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.

*직장내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

- 음담패설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
- 가슴,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- 공적인 장소인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

*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상 기관업무처리 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

-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.
-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다.
-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.
-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.

*성폭력 예방 노력

- 평등한 가치기준을 가진 조직문화 형성
- 2차 피해 예방 노력과 피해자 지지하기
- 직급, 성별 불문한 존칭, 존중 언어 사용
- 차별, 고정관념, 편견 깨기

*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

-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
-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확충
-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
-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